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공보담당관 밀양지청장 박현철

보 도 자 료 2018. 3. 15.(목)

자료문의 : 지청장실
전화 055-350-4301
팩스 055-350-4555

제 목 **밀양 S병원 화재사건 수사결과**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박현철)은 2018. 1. 26. S병원 화재로 환자 및 병원관계자 50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수사하여, 2018. 3. 15.까지 S병원의 E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보건소 공무원 등 10명(E의료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함
- 수사결과, S병원은 1층 응급실 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단락(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독 연기 배출을 어렵게 하는 불법 건축물 방치, 정전에 대비한 적합한 비상발전기 미비, 실질적인 소방훈련 미 실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화재피해가 확산되었음을 확인함
-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화재사고 원인을 규명하였고, S병원의 안전의식 결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 의료기관 감독 공무원의 부실한 점검 등이 결합하여 빚어진 인재였음을 확인함
- 수사결과 확인된 입법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건의하였고,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I 사건 개요

- 사건 내용
 - 2018. 1. 26. 07:32경 S병원(E의료법인 운영)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화재로 환자 및 병원관계자 50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
 - 수사 경과
 - 2018. 1. 26. 사고 발생 직후 **경찰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남지방청 2부장) 구성, **검찰 수사팀**(수사지휘 총괄 창원지검 김홍창 차장검사, 수사팀장 박현철 밀양지청장), **수사지원팀**(팀장 창원지검 김완규 형사2부장) 구성하여 상호 협조체제 구축
 - 2018. 2. 10. E의료법인 이사장, S병원 소방안전관리자 구속
 - 2018. 2. 23. S병원 행정이사 구속
 - 2018. 3. 6. E의료법인 이사장, S병원 소방안전관리자 구속기소
 - 2018. 3. 15. 위 행정이사 구속기소, ○○보건소 공무원 등 10명(E의료법인 포함) 불구속기소
 - 처리 결과
 - **S병원 관계자** : E의료법인 이사장, S병원 행정이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구속기소,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여 화재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자 4명을 기소
 - **안전점검 관련 공무원** :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前·現 ○○보건소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
 - **기타** : E의료법인 이사장은 성능미달의 비상발전기를 S병원에 설치하면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사실과 불법건축 사실이 확인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하고, 그 외 본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
- ※ 별첨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 결과' 참고

II 화재 원인 및 피해 확대 이유

□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 및 화재 취약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 결과, S병원 1층 응급실 천장 전기배선의 단락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락의 원인은 전기 배선 과정에서 끼임, 눌림, 접촉, 마찰이나 경년열화 등 전기배선의 노후화로 추정
- S병원은 전기배선에 대한 정밀점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약 26년 된 노후 건물로서 천정 안쪽에는 단열재·보온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시공된 전열선이 노후된 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천장 전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전기단락으로 인한 불꽃 발생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음
- 또한, 병원 증축을 반복하여 왔던 관계로 전력량이 부족하여 2차레나 전력증설 시공을 하였고, 겨울철이면 난방기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전력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되어 왔고, 2017년에 3회에 걸쳐 병원 식당, 매점 등 건물 여러 곳에서 누전된 사실이 있는 등 누전 또는 전기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였음

□ 피해가 막대한 사유

- 이 사건 화재는 발화 이후 화염과 유독가스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단시간에 많은 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난으로, 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부분인 S병원의 상황에 맞는 필요충분한 물적설비 및 의료·구호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피해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
- S병원 입원환자의 특수성
 - S병원의 환자는 상당수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했고,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었으며, 5층(6병동)은 같은 E의료법인이 운영하는 S요양병원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병원 전체가 요양병원과 같이 운영되어 왔고, 다수의 환자들은 신체보호대로 결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3층에는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음

* S병원 입원환자 85명 중 70대 이상이 64명(70대 19명, 80대 37명, 90대 8명), S병원 사망환자 44명 중 80대 이상이 30명, 부상환자 41명 중 15명이 80대 이상

- 따라서 물적 소방시설, 구호 인력 배치, 실질적 소방훈련 등 대비가 미흡할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설치

- S병원 입원환자의 특성 상 단시간에 대피가 어려웠고, 대피시킬 인력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하거나 확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요구되었으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음¹⁾

○ 불법건축물 방치

- S병원과 S요양병원을 잇는 2층 연결통로 바닥에는 1층과 통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입된 1층의 유독가스가 불법 건축된 폐쇄형 비가림막으로 인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음
- S병원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위 폐쇄형 비가림막에 대하여 수차례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약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었음

○ 방화문 및 방화벽 철거

- S병원 1층 엘리베이터 옆 중앙계단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과 1층 보조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은 철거된 상태에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1층에서 차단되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통하여 상층부로 확산되었음

○ 필요충분한 비상발전기 미구비

- S병원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는 엘리베이터 가동 전압 340v에 못 미치는 220v 전압이고, 엘리베이터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전시 자동으로 가동되는 발전기가 아니라 병원 외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조작이 필요한 수동 비상발전기였음
- 결국, 이 사건 화재 시 아무도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지 않아 중증 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환자 2명이 사망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6명이 질식사하였음

1) S병원은 법률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2014년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판결에서 조리상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인정함바 있음

○ 화재 대비 인력 부족

- 각 층 병실에는 거동이 불가능한 많은 수의 환자가 있었음에도(화재 당시 2층에 34명, 3층에 21명, 4층에 28명의 환자가 각각 입원), 당직인력은 각 층에 간호조무사 1명과 1~2명의 간병인만 배치함으로써 실제로 입원 환자 85명 중 44명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 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미흡

- 야간당직 시간대에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소방계획에는 간호사가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소방계획이 형식적이었음
- 인력 부족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시행하지 않았음

○ 환자 신체보호대의 부적절 사용

- 119구조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3층 18명, 4층 7~8명, 5층 5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로 결박되어 있었고,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 13명 이상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로 결박되어 있었음
-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보호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체보호대 부적절 사용이 환자 구조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 별첨2 화재 현장 사진 참조

III 수사 의의

○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수사 전개

- 검찰(창원지검, 창원지검 밀양지청), 경찰(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히 S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병원관계자, 소방대원, 유족, 피해자 등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화재원인 및 피해 확대에 대한 형사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
- 사고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신속한 현장검증, 화재 잔존물 분석, 연기 이동경로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하여 화재원인을 규명

○ 병원의 수익만을 추구하고 환자의 보호·안전의무를 방기한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음

- S병원은 A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 연매출 36억 원에서 2016년에는 74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였고, 2017. 11월경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신축하는 등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설비·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투자 미흡
- 이에 화재사고의 주요 책임자인 E의료법인 이사장, S병원 행정이사,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S병원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화재 등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건물과 그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소방설비 및 대피·구호인력을 구비할 필요성 확인

- S병원은 화재 상황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제할 법규정이 없는데,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필요충분한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2)
- S병원은 성능미달의 비상발전기만 구비한 상태였고, 관련 법규정에는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3) 자가발전시설 관련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여 입법개선을 건의
- 또한, 환자 수에 비례한 적정 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이 행해진 바 없음을 확인하여, 관련 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촉구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등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위 법률 시행 前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 6. 30.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규정), 이 사건 화재사고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 2. 9. 국회에 발의된 상태임
-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는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가발전시설의 성능, 자가발전 시설이 연결되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의료기관 감독공무원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경각심 환기

- 병원 화재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점검함에 있어 실제 성능이나 필수 시설로의 전력 공급 여부 등 적합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적합 판정을 한 ○○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
- 이로써 의료기관 감독공무원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 사건 수사결과를 관련당국에 통보함으로써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IV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수행, 직무유기 등 업무상 비위가 발각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음

<별첨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 결과

| 연번 | 성명 | 직책 |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 처분 |
|----|--------------|-------------------|--|---------------|
| 1 | A (55세) | E의료법인 이사장 | ○'18. 1. 26.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50명 사망, 109명 상해 [업무상과실치사상] ○'18. 1. 8.~26.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두지 아니함 [의료법위반] ○'17. 2. 28.~'18. 1. 26.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 의사 4명을 고용 [의료법위반] ○'14.~'17.경 목조 휴게실, 컨테이너 창고, 샌드위치 판넬 창고, 목조 비가림 천장 등 4건 불법 증개축 [건축법위반] ○'12. 4.경 S병원 및 S요양병원에 10kw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0kw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의료 시설 점검업무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3. 6. 구속 기소 |
| 2 | B (38세) | S병원 총무과장, 소방안전관리자 | ○'18. 1. 26.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S병원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50명 사망, 109명 상해 [업무상과실치사상] | 3. 6. 구속 기소 |
| 3 | C (여,59세) | S병원 행정이사 | ○'18. 1. 26.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S병원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50명 사망, 109명 상해 [업무상과실치사상] ○'18. 1. 8.~26.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두지 아니함 [의료법위반] ○'17. 2. 28.~'18. 1. 26.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의사 4명을 고용 [의료법위반] | 3. 15. 구속 기소 |
| 4 | D (53세) | S병원 병원장 | ○'18. 1. 26.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S병원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50명 사망, 109명 상해 [업무상과실치사상] ○'18. 1. 15.~26. H 등 4명의 의사로 하여금 병원장인 D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함 [의료법위반] | 3. 15. 불구속 기소 |

| 연 번 | 성 명 | 직 책 |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 처분 |
|--------|--------------|----------------|---|-----------------------------------|
| 5 | E 의료법인 | 법인 | <p>○'18. 1. 15.~26. H 등 4명의 의사로 하여금 병원장인 D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함 [의료법위반]</p> <p>○'18. 1. 8.~26.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두지 아니함 [의료법위반]</p> <p>○'17. 2. 28.~'18. 1. 26.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의사 4명을 고용 [의료법위반]</p> <p>○'17. 12. 1. 약사가 아님에도 S요양병원 간호사인 L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함 [약사법위반]</p> <p>○'17. 12. 1.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함 [약사법위반]</p> <p>○'14.~'17.경 목조 휴게실, 컨테이너 창고, 샌드위치 판넬 창고, 목조 비가림 천장 등 4건 불법 증개축 [건축법위반]</p> | 3. 15. 불구속 기소 (양벌 규정) |
| 6 | F (여,57세) | ○○보건소 공무원 | ○'12. 4. S병원에만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S요양병원이 자가발전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같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의 결재를 득함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3. 15. 불구속 기소 |
| 7 | G (여,59세) | 前○○보건소 공무원 | | |
| 8 | H (여,52세) | 대진 의사 | | |
| 9 | I (34세) | 대진 의사 | ○'18. 1. 15.~26. 병원장인 D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함 [의료법위반] | 3. 15. 약식 기소 |
| 10 | J (36세) | 대진 의사 | | |
| 11 | K (76세) | 前S요양병원 의사 | ○'17. 12. 1. 약사가 아님에도 S요양병원 간호사인 L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함 [약사법위반] | 3. 15. 약식 기소 |
| 12 | L (여,44세) | 간호사 (S요양병원) | ○'17. 12. 1.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함 [약사법위반] | 3. 15. 약식 기소 |
| 13 | M (41세) | N발전기 운영자 | ○'12. 4.경 S병원 및 S요양병원에 10kw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0kw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함으로써 A의 보건소 공무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 3. 15. 약식 기소 |

<별첨>

1. 화재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2. 복잡하게 얽힌 노후된 천장 배선



3. 화재 등 위급상황 대비에 미흡한 수동 비상발전기

